

# 과업지시서

- 2026년도 AI 기반 경제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운용 인프라 증설 -

2026. 06.

## 목 차

<b>I. 일반사항</b> .....	<b>3</b>
1. 목적 .....	3
2. 사업개요 .....	3
3. 추진배경 .....	3
4. 사업범위 .....	3
5. 입찰 참가자격 .....	3
6. 주요 사업내용 .....	4
<b>II. 물품 내역 및 세부규격</b> .....	<b>5</b>
<b>III. 특수조건</b> .....	<b>6</b>
1. 물품 납품 시 유의사항 및 중점 고려사항 .....	6
2. 물품 공급 및 설치 .....	6
3. 물품 검수 및 시험운영 .....	7
4. 교육 및 운영지원 .....	8
5. 사업수행 관리 .....	8
6.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	9
7. 보안사항 .....	10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10
9. 기타사항 .....	11
<b>IV. 보안사항</b> .....	<b>12</b>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	13
[별표2] 사업자 보완위규 처리기준 .....	14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	16
[별표4]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17
[서식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	19
[서식2] 보안서약서(참여자용) .....	20
[서식3] 용역사업 참여자 보안교육 확인 .....	21
[서식4] 보안확약서(대표자용) .....	23
[서식5]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사업참여자용) .....	24

# I 일반사항

##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하 “발주기관”)의 “AI 기반 경제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운용 인프라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자인 납품업체(이하 “계약상대자”)간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사업개요

- 1) 사업명 : 2026년도 AI 기반 경제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AI 운용 인프라 증설
- 2) 계약기간 : 계약체결로부터 2개월 이내
  - 계약기간은 장비의 설치 후 검사검수 및 시험운영기간을 포함
  - 발주처와의 협의 및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 3. 사업범위

- 1) 시스템 구매 및 설치의 범위는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특수조건”에 따름
  - 기존 고성능 GPU 서버(H200 × 2)에 동일급 GPU 2장 추가 장착
  - GPU 증설에 따른 시스템 메모리(32GB DDR5 × 8) 동반 증설
  - 개발서버 저장장치(1.92TB SSD × 6) 추가 장착 및 RAID 구성
  - 추가 GPU와 기존 GPU 간 정상 연동 및 멀티 GPU(NVLink 포함) 병렬 처리 환경 구성
  - 증설 구성 반영에 따른 OS·드라이버 설정
  -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
  - 발주기관 보안 규정사항의 준수

## 4. 입찰 참가자격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 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등록을 필한 업체
- 3) 컴퓨터서버(세부품명번호 : 4321150102)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소지한 업체

- 4) 입찰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5) 제품 품질의 신뢰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물품 제조사(또는 공급사)에서 발행한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약속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 6)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한다.

## 5. 주요 사업내용

### 1) 구성도 및 장비 현황

※ 상세 정보통신망 회선내역 및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 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 요청이 있을 경우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함

### 2) 세부추진일정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2026.6
- 구축 및 안정화: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3) 납품 조건

- 납품장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한국개발연구원 내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납품방법: 협상 후 진행
- 하자보증기간: 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4) 산출물 제출

제출 시기	제출 서류
계약 시	- 제조사(또는 공급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 약속서 원본 - 사업수행계획서(납품물품 상세명세서, 공급일정계획, 참여인력 투입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포함) -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자)
검수 시 (사업완료)	- 사업완료보고서(설치 내역서, 납품물품 단가명세서, 설치 사진, 유지보수체계도 포함) - 관리자/사용자 매뉴얼 - 보안 약속서(대표자 및 참여자) - 하자보증서 제출

- \* 각종 문서는 발주처의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문서는 계약의 일부가 됨.
- \* 운영에 필요한 추가 산출물 요구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II 물품내역 및 세부규격

종류	항목	내용
GPU 증설 (고성능 GPU 서버용)	GPU	○ NVIDIA H200 NVL급 고성능 AI 추론용 GPU X 2장
	메모리	○ 32GB DDR5 × 8 - 기존 메모리와 동일 규격·파트넘버 적용
	OS	○ BIOS·드라이버·펌웨어 최적화
저장장치 증설 (개발서버용)	디스크	○ 1.92TB NVMe SSD X 6EA (RAID 구성)
공통	Warranty	○ Warranty: GPU 장비 3년 제공, 기타 파트(메모리 및 SSD) 1년 제공(정품확인서 및 워런티 증서) ○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 III 특수조건

### 1. 물품 납품 시 유의사항 및 중점 고려사항

-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각종 장비의 구성내역을 충분히 사전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성실의 의무를 진다.
- 2)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하는 각종장비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통신망(LAN) 연결 등이 “발주기관”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각종 장비 및 관련 S/W를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가 계약시 제조사로부터 제조사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이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4)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각종장비(소프트웨어 포함) 및 모든 부대장비는 납품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최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5) 물품 공급 및 설치의 계약체결일 이후 가급적 2개월 이내로 운용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6) 제조사의 상황 등에 따라 사업기간 기간내 최근 12개월 이내 제조장비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하여 우선 설치하고, 대체설치 후 6개월 내 신제품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 2. 물품공급 및 설치

- 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제조사의 정품 및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납품되는 장비는 사전에 구비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규격서에 명시된 일체의 물품을 납품 및 설치기한까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설치, 납품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검수 시 **관리자/사용자 매뉴얼**을 제출한다. 또한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만일, “발주기관”이 적절한 설치, 납품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설치, 납품이 못할 경우에는 선정 이후까지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선정 이후에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설치, 납품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그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4) 물품반입은 포장상태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담당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개봉 시 각 장비의 개봉 전·후 상태, 시리얼번호 등을 사진으로 첨부하여 보고서로 제출한다.
- 5) 장비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심각한 에러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 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각종장비를 설치할 때 납품장소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용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손상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8) 각종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규격서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본다.
- 9) 각종장비 및 부대장비 납품 설치는 일과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각종 부대장비, 소모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적시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 10) 기존 전산장비(서버, LAN, 통신장비 등)의 접속 및 상호 연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장비들의 재설정 작업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관련업체와 협력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11)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3. 물품검수 및 시험운영

- 1) 본 건에서 검수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물품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규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및 장비가 업무환경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계약상대자”가 검수요청 전 “발주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3) 납품물품의 정품 유무 확인 과정에서 감독관의 요구 시 제조사의 정품유무 정밀검사는 **제조사의 검사원이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 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3)항에 의한 현장 확인으로도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가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 5) “계약상대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기관”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계약상대자”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모든 물품에 대한 납품 및 설치, 검수 이후에 계약 종료일 5일 이내에 납품에 대한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 4. 교육 및 운영지원

-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 시 각종 장비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자체 유지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추 수 있도록 납품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함.
- 2) “발주기관”이 장비확장, 타기종과의 연결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3) 관리자 교육과 관련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하에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5. 사업수행 관리

- 1)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PM)을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수행토록 해야 한다.
- 2) 사업관리 책임자(PM)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특급 또는 고급 이상)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구축·전환 기간까지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발주기관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투입 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5)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6)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8) 사업 수행자는 사업 및 수행인력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동법 시행령 중 해당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9) 기타 언급되지 않은 착수계 제출, 변경관리 등 사업관리에 대한 절차 및 서식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을 준용하여야 한다.
- 10) 산출물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모든 산출물은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11)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축에 있어 적용시점이 다른 제품과 관련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별 상세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한 추진일정 계획과 제안된 일정계획이 다른 경우 사업기간 내의 원활한 완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1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6.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 1)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사후관리방안 수립 등이 포함된 사업완료보고서를 사업 완료시 제출한다.
- 2) 하자보증기간동안은 시스템 설치에 참여한 “계약상대자” 중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애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 발생 시 장애통보 후 24시간 내에 계약상대자는 장애 복구를 완료하고 장애처리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익일 내에 복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연장 조치할 수 있다.
- 4)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주요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담당자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5) 하자보증기간 중 제품에 중대한 결함 및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담당자 감독 하에 동일 신품(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6) 하자 보수기간 동안 전체 장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함.

## 7. 보안사항

- 1)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보안관리수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별표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 (별표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4)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H/W 및 S/W)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5)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6)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7) 사업자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용역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발주기관에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 8)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며, 용역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 10)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저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11)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운용 규정 및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수한다.

##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1) “발주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상대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개발연구원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개발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9. 기타사항

- 1) 본 규격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2) 본 규격서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 또는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3) “계약상대자”은 면허, 특허권, 의장권, 공업소유권, 지적소유권의 침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갑”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이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한국개발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수행한다.

## IV 보안사항

###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 ① 사업자는 한국개발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2]의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개발연구원에 납부한다.
-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수행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한국개발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③ 사업자는 [별표4]의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④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4]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4.30.시행) 제56조 참조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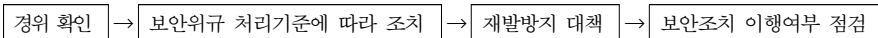
[별표2]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참여 제한</li> <li>○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li> </ul>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반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li> <li>○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li> </ul>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얼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 위약금 부과 금액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10% 이하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별표4]

# 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별표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번호 관리 및 작업이력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위규자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직원이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용역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공무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할 수 있다.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 철저
- 컨설팅의 경우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직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보안관리 직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서식1]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_\_\_\_\_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본인은 물론 당사업자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 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 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의 책임이 전적으로 당사업자에 있음을 서약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상호(사업자번호) :  
주 소 지 :  
대 표 자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2]

보안 서약서(사업 참여자용)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_\_\_\_\_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요청서 및 사업수행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사업 수행 전에 사업 참여자로 보안교육을 받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정보를 절대 누출하지 않을 것이며, 누출시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21호에 따라 소속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_\_년 \_\_월 \_\_일

상 호 :  
직 급 :  
주 소 지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4]

보안 협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_\_\_\_\_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협약서를 제출합니다.

-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협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_\_년 \_\_월 \_\_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

[서식5]

정보누출금지 협약서(사업 참여자용)

본인은 20\_\_년 \_\_월 \_\_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계약 체결한 \_\_\_\_\_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 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_\_년 \_\_월 \_\_일

업 체 명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귀하